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64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안도결 · 임호선 · 전진숙
양부남 · 박균택 · 민형배
정일영 · 조승래 · 정진욱
박홍근 · 진성준 · 조인철
박 정 · 김영환 · 박민규
정태호 · 민병덕 · 조계원
이언주 · 한정애 · 김동아
김태년 의원(22인)

제안이유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태확인(안 제14조의4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실태확인원 채용(안 제14조의4제2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다. 국세청장 위탁(안 제14조의4제3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국세청장의 과세정보 활용(안 제14조의4제4항 신설)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바. 실태확인 방법 등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14조의4제6항 신설)

규정한 사항 외의 실태 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9조제1항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국세청장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안 제40조제1항 신설)

재정경제부 장관이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차. 국세청장 위탁(안 제40조제2항 신설)

재정경제부 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실태확인)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제3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포함)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

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고, 제8조의 동의는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 · 절차 · 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다만,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장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통신망 구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1. 채권의 부과·징수 관련 자료의 관리 및 제공
 2. 채권의 채납정보 및 채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채권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채권의 징수 및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4(실태확인)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제3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포함)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u> <u>1. 체납자의 거소 · 수입 ·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또는 질문</u> <u>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u> <u>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u> <u>②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u>

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 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고, 제8조의 동의는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태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실태 확인원 또는 실태 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 확인의 방법·절차·실태 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

<신 설>

한 과태료) ① 중앙관서의 장
은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
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
만,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장
에 위탁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
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40조(채권의 징수 및 관리에 관
한 정보통신망 구축) ① 재정경
제부장관은 채권의 징수 및 관
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의 징
수 및 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

1. 채권의 부과·징수 관련 자
료의 관리 및 제공
2. 채권의 체납정보 및 체납처
분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부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제공

4. 채권의 운영상황의 분석, 통
계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5. 그 밖에 채권의 징수 및 관
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
요한 서비스의 제공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업무의 효
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